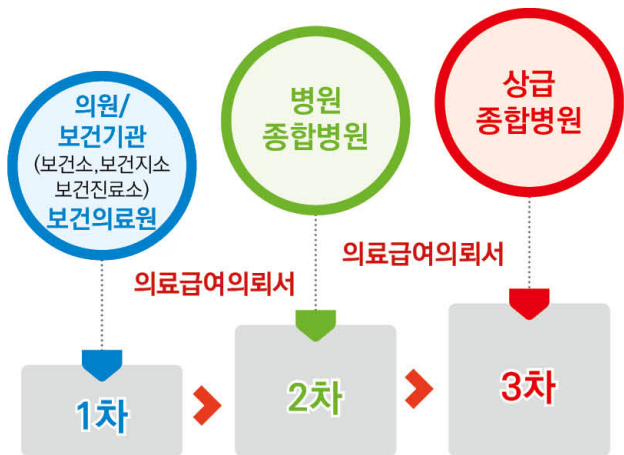


# 의료급여제도 안내문

## 의료급여 이용절차 3단계



### 의료급여 이용절차 3단계

의료급여수급권자는 **1차 의료급여기관(의원급)**에 의료 급여를 **우선 이용**하여야 하며, 상위기관의 진료에 필요한 경우 **의료급여의뢰서**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(의료급여의뢰서 없이)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**전액을 본인**이 부담해야 합니다.

- 절차의 예외 :  
응급·분만, 등록 희귀·중증 난치 질환 등

##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



| 구분     |    | 1차<br>(의원) | 2차<br>(병원,<br>종합병원) | 3차<br>(상급<br>종합병원) | 약국   |
|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<br>종 | 입원 | 없음   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| —    |
|        | 외래 | 1,000원     | 1,500원              | 2,000원             | 500원 |
| 2<br>종 | 입원 | 10%        | 10%                 | 10%                | —    |
|        | 외래 | 1,000원     | 15%                 | 15%                | 500원 |

- 단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은 종합병원 이상급 이용 시 약국 비용총액의 **3% 본인부담**
- **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**  
(선별급여 항목별 30~90%, **본인부담**)
- 1종 : 건강생활유지비 지원

## 의료급여의 제한(의료급여법 제15조)

### 자신의 고의로 인한 범죄 행위, 제3자의 가해 행위에 의한 사고

- **폭행사**고, 음주운전 및 **교통사고**, 작업 중 부상 등의 이유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의료비는 **본인 또는 제3자가 부담**합니다.
- 수급권자가 **정당한 이유없이**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**의료급여가 제한**됩니다.

##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시행

※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60일 전 관할 **시·군·구에 연장승인 신청**을 해야 합니다.  
(매년)

- 연장승인 미신청자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 적용
- 질환별 상한일수 및 연장일수(매년 1월 1일~12월 31일)

| 질환군  | 등록중증·희귀난치질환 | 만성고시질환  | 기타질환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상한일수 | 365일        | 380일    | 400일              |
| 연장일수 | 1회(90일)     | 1회(75일) | 1회(90일) + 2회(55일) |

- 급여일수 = 진료받은 일수 + 입원일수 + 투약일수
- 연말에 과도한 처방으로 급여일수가 초과될 수 있습니다.(※주의요망)

##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

연장 후에도 급여일수가 초과될 때 1차 의료급여기관(의원급)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입니다.

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방법이 궁금합니다.

-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.
-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 적용

##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

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건강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-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기존 수급권자 중 **장기입원자**, **과다의료이용자**를 대상으로 합니다.

사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
- 서해구청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관리대상자에게 방문, 전화, 서신 등으로 상담합니다.

의료급여 타인대여 시 (1년 이하의 징역, 1000만원 이하의 벌금)